보 건 복 지 부

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

1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88호(2020.12.11.), 제2020-289호(2020.12.11.), 제2020-290호(2020.12.11.) 관련입니다.

2.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요양급여 적용에 따라,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, '20.12.14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1부.
2. 선별급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부.
3.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.
4.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1부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질병관리청장(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장), 질병관리청장(위기대응총괄과장)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감염학회, 대한진단검사의학회, 응급의학회, 중환자의학회, 공공의료과장, 응급의료과장, 의료기관정책과장

주무관 성지은 보건사무관 조영대 보험급여과장 전결 2020. 12. 12. 이중규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여과-5868 (2020. 12. 12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/ http://www.mohw.go.kr

전화번호 044-202-2737 팩스번호 044-202-3934 / je0925@korea.kr / 대국민 공개